

# 우체국 행복가득희망적금 특약

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우체국 행복가득희망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 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, 적립식 예금 약관, 생계형 저축 약관, 세금우대 종합저축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적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이다.

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적금의 가입대상자는 패키지별로 구분한다. (패키지 별 1인 1계좌)

패키지 구분	희 망	행 복
가입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족, 조손가정, 장애인, 북한이탈 주민, 근로장려금 수급자, 근로소득 연 15백만원 이하 근로자,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	헌혈자, 입양자, 장기·골수 기증자, 다자녀가정, 부모 봉양자, 협동조합 조합원, 소상공인, 농어촌 읍·면 단위 거주자

## 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5조 【적립금액】

이 적금은 납입 회차당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월 30만원 까지 자유롭게 저축하여야 한다.

## 제6조 【기본이율】

신규 가입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 및 우체국에 고시한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.

## 제7조 【우대이율】

① 이 적금은 패키지별 가입대상자 구분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
1. 희망 패키지 가입대상자는 연 5.0%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2. 행복 패키지 가입대상자는 연 0.3%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
## 제8조 【이율적용방식】

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# 제9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-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- ② 만기일이 휴일(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.

- ③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
해약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는 매회 납입금  
액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

### 제10조 【이자계산】

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  
로 나누어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  
에 의하여 절사한다.

### 제11조 【중도해지】

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중도해지이  
율을 적용한다.

### 제12조 【만기 후 해지】

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  
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.

### 제13조 【특별중도해지】

- ①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, 적금 만기  
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 
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. 단, 가입일로  
부터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 
적용한다.
-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주택구입,  
입원, 출산, 유학, 결혼, 이민, 퇴직, 사업장의 폐업 발생  
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 1개월 전 후에 우체국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주택구입 :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
2. 입원 : 입원확인서(2주 이상)
3. 출산 : 산모수첩, 의사소견서, 출생증명서
4. 유학 :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
5. 결혼 :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, 혼인신고서
6. 이민 : 해외이주 신고확인서
7. 퇴직, 폐업 : 퇴직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서

#### 제14조 【기타】

- ① 이 적금은 일반과세,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.
- ② 이 적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다.
- ③ 이 적금은 예금 잔액의 95% 범위내에서 정해진 한도액까지 예금담보 대월약정이 가능하다.

## 부 칙

이 특약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